

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:		접수일:		처리기간:	120일
① 신청인 (피해자)	성명(법인명):	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번호):		
	주소:				
	연락처	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			
② 대리인	성명:		주민등록번호:		
	연락처	전화번호 : 휴대전화번호 :			
③ 신청액	재산손해:		휴업손해:		
			합 계:		
④ 화물 보험 가입 사항	보험종목:		보험회사:		보험금 수령여부:
	계약일:		보험계약자:		보험금 수령액:

본인은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4·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뒤쪽 참조
------	-------

첨부서류	1.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1부 2. 4·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, 선적의뢰서,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1부 3.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(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4. 그 밖에 4·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및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(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"담당 공무원 확인사항" 중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,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·신용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4조, 제24조의2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·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)에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, 이용·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②란에는 4·16세월호참사 관련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작성합니다.
- ③란의 '재산손해'에는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손해액을 적습니다.
- ③란의 '휴업손해'에는 영업용 화물(차량)의 멸실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에 대한 손해액을 적습니다.
- ③란의 구체적인 사항은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.
- ④란은 화물 보험가입 내용이 없는 경우 적지 않아도 됩니다.
- 4·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위의 서류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·도면·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